

충청북도의회장에 관한 규정(안)

충청북도의회

충청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(안)

1. 제 안 이 유

- 도민의 대표로서 명예직인 도의원이 임기 중에 도민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
- 고인의 유지를 기리기 위하여 의회에서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- 의회장은 현직 도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 중, 그 유가족이 희망하는 때에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(안 제2조)
-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장의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3조)
- 의회장의 장의기간, 절차,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함(안 제6조)
-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함(안 제7조)

충청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충청북도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이 직무를 수행하다 임기중에 사망하여 충청북도의회장(이하 "의회장"이라 한다)으로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회장 대상자)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로서,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.

제3조(장의위원회 구성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장이 결정되었을때는 의회에 의회장장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.

④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 상임위원장, 사무처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의원 및 고인의 친지대표 등으로 한다.

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.

⑦기타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장의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
2.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

②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영결식)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, 약력보고, 조사, 육성녹음 근정, 헌화 및 분향 등을 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.

제6조(장의기간등) 의회장의 장의기간, 절차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검소하게 진행한다.

제7조(장의비용)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소요 금액을 당해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집행한다.

제8조(조기계양) 의회장일에는 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계양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1】

장 제 비 기 준

사 항 별	규 격	수 량	비 고
부 고	신문공고 3단,15cm이하	지방지	영결식 참석대상자 등
영결식장 단설치	면적 6m×3m 높이3.5m이내	1식	임시 구조물가설, 영결식 현판 포함
영 구 차		1대	1일간
조 화	대형	1개	의장명의
조 문 용 품 - 헌화용 꽃바구니 - 헌화용 꽃 - 흉 화 - 근조 리본 - 장 갑 - 영구차 리본	생화 국화 흑색 백색 대형	2개 300송이 60개 300개 100쪽 1조	장의위원장,유족대표 장의위원,도의원,조객 장의위원,도의원 조객, 종사원 등 장의위원,도의원,종사원등
식대 및 차재료		실수요량	조객, 종사원 등
안내문 인쇄	영결식 안내	300매	영결식 참석 조객 등
방송시설		1식	영결식장
기타 장의식 준비	영결식기자재	1식	장의식용품,경호차량등

※ 단, 이 기준은 장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 적용 할 수 있다.